

의안번호	2208216
의 퇴 인	최수진의원
회 답 일	2025. 5. 9.
추계번호	25B09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보안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보안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함(제1항)	의무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에 추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보안지침을 수립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제3항 신설)	의무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제5항 신설)	재량규정
	안 제21조의2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신설)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신설) 1.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업무에 대한 지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기반 조성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3항 신설)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보안지침·대책의 수립체계 변경, 보안과제 분류범위 확대, 민감과제 분류 추가 등)은 현재 실시 중인 ‘연구보안체계 내실화사업’으로 수행(보안지침·대책 등 수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일부 관련 중앙행정기관(8개 부처)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고시)’을 수립하여 동 대책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개정안 시행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의 내용 수정 등이 필요함 ※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리 체계 개요’ 참조 - 보안과제 분류범위 확대 및 민감과제 분류 추가에 따른 과업은 중앙부처별로 설치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서 수행 가능함 (단위: 백만원) <table><tr><th>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th><th>사업방식</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보안체계 내실화)</td><td>출연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td><td>—</td><td>751</td><td>688</td></tr></table> 주: 동 사업에는 ‘연구보안 법령개정안 및 보안지침·보안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연구보안 현장지침 및 보안등급 분류가이드 작성·현행화 등’이 포함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방식	2023	2024	2025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출연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	—	751	688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방식	2023	2024	2025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출연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	—	751	688								
2	안 제21조의2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본문 참고										

2. 상세 사유

□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21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조직 구성 및 인력 규모, 인건비 및 사업비의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연구보안 전담기관과 유사한 기관 운영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연구보안 전담기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업무 중 일부(보안지침·대책 및 보안등급 분류가이드 작성, 연구보안 전문인력 양성·교육, 연구보안 전담 지원체계 마련 및 운영지원 등)에 대하여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보안체계 내실화사업(출연사업)을 통해 수행 중에 있음

[표 1] 연구보안체계 내실화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방식	사업내용	2023	2024	2025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출연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	■ 연구보안 법령개정안 및 보안지침·보안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 연구보안 현장지침 및 보안등급 분류가이드 작성·현행화 ■ 연구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현장 연구지원인력 재교육 ■ 연구보안 전담 지원체계 마련 및 운영지원	-	751	68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리 체계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① 부처·연구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② 부처는 보안과제를 분류하며 ③ 연구기관이 보안과제에 대해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시행)에 따라 과기정통부 주관 8개 부처*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고시)을 제정(‘22.6월)
 - 구 공동관리규정 대비 ① 보안과제 분류절차 명확화, ② 외국 기관과의 접촉관리 강화, ③ 보안수당 신설, ④ 제3자 기술실시 허용 명확화 등 연구보안 관리체계 개선
-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기상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 **(보안과제)**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하다고 부처에서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로 정의
- **(관리체계)**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① 보안대책(부처, 연구기관), ② 보안과제 분류(부처), ③ 보안관리 조치(연구기관), ④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부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⑤ 부처는 ①~④까지의 업무를 국정원에 위탁 가능한 체계로 구성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주요 내용]

구분	주체	주요내용
보안과제 분류 및 관리	중앙행정기관	- 연구개발과제 중 보안과제를 지정·해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운영 - 보안과제 지정 또는 해제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연구개발기관	-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 - 기관 내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를 지정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	연구개발기관	-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여 보안대책 수립·변경,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외국 연구자 참여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

구분	주체	주요내용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연구개발 기관	-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
	연구자	-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에 보안서약서 제출
외국 정부 및 연구자와의 접촉 관리	연구자	-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가 외국 기관·정부·단체와 접촉하는 경우 10일 이내 연구개발기관에 보고 -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승인 필요 - 외국 연구자 및 기관과 공동 연구 수행 시 사전 승인 필요
	연구개발 기관	- 보고 및 승인사항에 관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 통보
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	-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 심의 - 승인 사항을 1월 이내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
보안등급 표기	연구개발 기관	-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 문서는 I 급, II 급, III 급으로 보안등급을 분류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보안사고 대응	연구개발 기관	-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
	중앙행정 기관, 국가정보원	-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 수립 - 국가정보원장과 실태 점검 합동 실시 - 보안사고 경위 조사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기술이전 제한	연구개발 기관	- 보안과제에서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는 원칙적으로 이전 금지 - 외국으로 이전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